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2028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12. 6.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전남 해남군 D 전 1,006㎡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21. 4.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E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5. 6. 접수 제101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1. 2. 18. E과 대출금액 25,000,000원, 대출기간 39개월, 대출이율 연 15.1%, 연체이율 연 18.1%로 정한 신용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E은 2021. 4. 30. 자녀인 피고와 전남 해남군 D 전 1,0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5. 6. 접수 제101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E은 2021. 8. 23. 이 사건 신용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신용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2022. 7. 20. 기준 26,696,541원이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E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대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신용대출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때로부터 약 4개월 후 E은 이 사건 신용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신용대출계약에 따른 채권 합계 26,696,541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E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채무초과 상태인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